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

2019. 6



환 경 부
생 활 환 경 과

1. 어린이집 석면조사란?

- 1군 발암물질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체로 석면조사대상이 확대 됨. 이에 따라 430㎡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2019년 5월22일 ~ 2020년 5월21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해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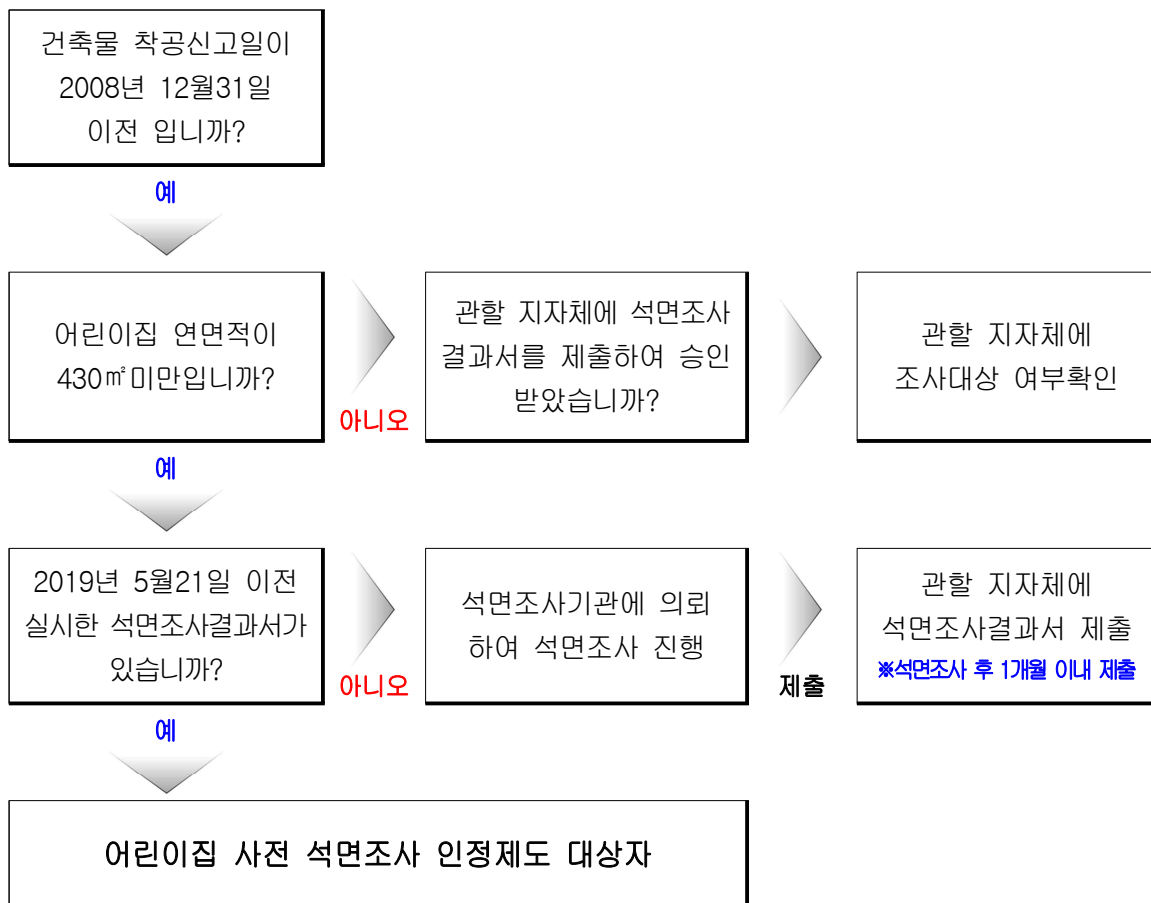
※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란?

- 2019년 5월21일 이전에 이미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. (2019년 5월22일 ~ 2019년 11월28일까지 접수)

3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

-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31일 이전이며, ③연면적 430㎡미만인 어린이집(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)



※ 2019년 5월21일(포함) 이전.

※ 인정제도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환경청, 석면조사대상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, 기타 문의는 석면관리 도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및 석면조사대상 관련 자주하는 질문 >

① 석면조사 제외대상 또는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.

⇒ 1)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어린이집 :

석면 사용 금지(2009.1.1.~) 이후에 착공신고된 건축물로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아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 제외대상

2)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 :

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은 이미(2012.4.29. 이후) 석면조사대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

3) 2019년 5월22일 이후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어린이집 :

2019.5.22. 이후에 석면조사를 받은 430㎡미만의 어린이집은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이며,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·군·구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해야함

※ 석면조사대상 여부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

② 석면조사 제외대상 또는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입니다. 별도로 승인 받거나 제출할 사항이 있나요?

⇒ 1) 석면조사 제외대상 : 별도로 제출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.

2)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제외대상(2019.5.22. 이후 석면조사가 완료된 어린이집) :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·군·구에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③ 연면적 430㎡미만 어린이집입니다.

5월21일 이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식별번호 및 확인증이 있습니다.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?

⇒ 제출해야 합니다. 5월21일 이전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한 430㎡미만 어린이집들은 법적으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

신규 회원가입을 하여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아이디 사용불가

④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입니다. 5월21일 이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. 다시 제출해야하나요?

⇒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

⑤ 아파트 대표어린이집 1곳에서 석면조사를 진행한 경우 단지 내 다른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결과로 제출할 수 있나요?

⇒ 제출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서가 없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⑥ 석면조사기관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.

⇒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 후 [공지사항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⑦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받았습니다.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
⇒ 인정절차 없이 관할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제출인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가입하여 석면조사결과서 등록 후

정부24(www.gov.kr)에 민원 접수진행.
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(<http://asbestos.me.go.kr/>)

※ 건축물소유자와 어린이집원장이 다를 경우 회원가입시 주의

1)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유형 확인 후 선택하여 가입진행

- 건축물소유자를 확인하여 개인/법인/행정기관 中 선택하여 가입
-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: 세움터(www.eais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- 첨부파일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
- “신청서 제출(회원가입완료)” 후 로그인하여 어린이집인정절차 진행

<아파트,빌라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적인 예시>

- ① 홍길동이 소유한 아파트 101호에 성춘향 원장님이 전세로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.
⇒ 소유자인 홍길동님 개인이 회원가입 후 인정절차 신청
* 개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는 회원가입 “개인” 선택
- ② 000회사에서 소유한 아파트 101호에 성춘향 원장님이 전세로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.
⇒ 소유자인 000회사 법인으로 회원가입 후 인정절차 신청
* 법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는 회원가입 “법인” 선택

※ 건축물소유자 유형 선택과 첨부파일이 잘못된 경우 반려가 됩니다.

※ 건축물소유자 유형별 확인방법과 필요한 첨부파일은 다음페이지 참고

유형1) “어린이집이 상가, 빌라, 아파트 등에 위치한 경우”

<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발급>
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갑)								(2쪽 중 제1쪽)	
고유번호 2826011200-3-06110000					명칭		호명칭		
대지위치 인천광역시				지번		도로명주소			
전유부분					소유자현황				
구분	층별	※구조	용도	면적(㎡)	성명(명칭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	변동일자	변동원인
주	1층	철근콘크리트구조	공동주택(아파트)	59.78	홍길동	**시 **구 **동	1/1	2018.11.12	소유권보존
		- 이하여백 -			예)680101-1*****				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분

※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

가입하기

법인

가입하기

행정기관

가입하기

*첨부파일 1

찾아보기...

파일설명

건축물대장

첨부파일 2

찾아보기...

파일설명

신청서 제출

취소

- 회원가입 유형 선택 :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“개인” 선택
- 회원가입 첨부파일 :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첨부

※ 건축물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유형에 해당하는 “법인”, “행정기관”을 선택해야 함.

유형2) “어린이집이 일반건축물, 단독건물 등에 위치한 경우”

<일반건축물대장(갑) 발급>

일반건축물대장(갑)						(2쪽 중 제1쪽)
고유번호			명칭		호수/가구수/세대수 0호/0가구/0세대	
대지위치 인천광역시			지번		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	
※대지면적 ㎡	연면적 ㎡	※지역 ㎡		※지구	※구역	
※건폐율 %	※용적률 %	높이 12.6m		지붕 (철근)콘크리트 평슬라브	부속건축물 동 ㎡	
※조경면적 ㎡	※공개공지·공간면적 ㎡	※건축선 후퇴면적 ㎡		※건축선 후퇴거리 m		
건축물 현황				소유자 현황		
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㎡)	성명(명칭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
주33	지1	철근콘크리트구조	노유자시설(기계실)	89.44	*재단/ **법인/ **시/ **교육감	인천광역시
주33	1층	철근콘크리트구조	노유자시설(직장보육시설)	280.84	**	1 / 1
						변동일 2018.05.01
						변동원인 소유자등록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및 필요 사업자등록증 안내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

※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
가입하기

법인
가입하기

행정기관
가입하기

<재단,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>

⇒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“**법인**” 선택

⇒ **재단, 법인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(소유자가 본점인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 필요)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

※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
가입하기

법인
가입하기

행정기관
가입하기

<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경우>

⇒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“**행정기관**” 선택

⇒ **행정기관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- ※ 건축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“개인”으로 선택 사업자등록증은 미첨부
- ※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(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첨부시 반려됨)

유형3) “공동소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인 경우”

<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발급>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건축물현황									
고유번호					명칭		특이사항		
대지위치		부산광역시	지번		도로명주소		부산광역시		
건축물현황									
구분	건축물명칭(번호)	도로명주소	건축물 구조	건축물 지붕	층수	용도	연면적(㎡)	변동일	변동원인
주77		부산광역시	철근콘크리트구조	(철근)콘크리트	1/23	어린이집	238	2001.06.21	신축
주78		부산광역시	철근콘크리트구조	(철근)콘크리트	1/25	관리노인정	1,035.57	2001.06.21	신축
주79		부산광역시	철근콘크리트구조	(철근)콘크리트	1/25	관리사무소	92.238	2001.06.21	신축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

※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
가입하기

**법인
가입하기**

행정기관
가입하기

사업자등록증
(법인사업자:본점)

등록번호 :

법인명(단체명) :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대표자 :

개업연월일 : 2008년 01월 01일 법인등록번호 :
사업장소재지 :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: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“법인” 선택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가입
- 회원가입 첨부파일 :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첨부

2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

2-1) 로그인 이후 “어린이집 인정절차신청” 클릭



2-2) 신청서 작성 후 신청(접수)

○ 조사결과

* 조사일시: ex)2014-01-01

* 조사결과: 수동입력 조사결과 있음 조사결과 없음

○ 첨부파일

* 석면건축물여부: ☒ 석면건축물 ☐ 해당없음 추가

* 파일설명: 석면조사결과서 첨부파일 찾아보기

*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전체를 첨부해주세요.

임시저장 신청(접수) 목록

- 조사결과 : 조사결과 있음 선택
- 석면건축물여부 : 석면조사결과 석면면적 50m²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 선택
- 석면건축물여부 확인방법 : 석면조사결과서 내용중 “석면함유 건축자재 합계”와 같이 석면면적이 기재된 부분 확인

※ 석면조사결과서는 전체파일 첨부(일부만 첨부시 반려됨)

※ 석면지도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해야 함

<회원가입 및 인정제도 신청 자주하는 질문 >

① 회원가입시 주소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

⇒ Internet Explorer 11버전 이상 또는 크롬(chrome)브라우저에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②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?

⇒ 세움터(www.eais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.

③ 건축물 소유자와 어린이집 대표가 다른 경우 제출은 누가해야 하나요?

⇒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및 후속되는 모든 신청은 **건축물 소유자가 진행**해야 합니다.

※제2조(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)

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(생략)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.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⇒ 회원가입은 건축물소유자(법인)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 건축물대장(총괄표제부)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⑤ 지자체 행정기관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.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⇒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(행정기관)를 선택하고 지자체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첨부파일은 건축물대장과 지자체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

⑥ 가입유형 선택을 잘못했습니다. 변경할 수 있나요?

⇒ 신규로 재가입해야 합니다.

다만,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기존아이디는 탈퇴해야 합니다.

⑦ 회원가입 서류(건축물대장, 사업자등록증)를 보완하고 싶습니다.

⇒ 회원정보수정메뉴에서 첨부된 파일 삭제 후 재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[어린이집인정절차현황] 메뉴에서 '상태' 확인

1-1) 인정신청 결과가 “최종승인”인 경우 지자체 민원접수 진행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현황

접수번호 건축물명 진행상태 전체

신청(접수)일 ex)2014-01-01 ~ ex)2014-01-01

검색

Total: 3건

번호	접수번호	건축물명	주소	신청(접수)일	상태
3	110005544	신나리4어린이집	인천광역시 서구 원곡로 42 (경서동)	2019-05-15	최종승인(인정)

※ 신청결과는 문자통보(회원가입시 기재한 번호)

※ 인정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 지자체 민원접수를 진행해야 함

1-2) 불인정인 경우

- 자료보완이 가능한 경우 : 자료 보완 후 인정절차 재신청
-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: 석면조사 채질시 후 인정절차 없이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 진행(정부24 - www.gov.kr)

< 자주하는 질문 >

① 결과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⇒ 결과통보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1조에 따라 기술검토 기간(인정여부 심사)은 민원처리 기간에 미산입

② 실수로 동일 어린이집 인정절차 접수를 2번하여 인정통보를 2번 받았습니다. 다음 단계인 지자체 민원접수도 2번해야 하나요?

⇒ 지자체 민원접수는 1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) 온라인 접수방법 - 정부24(www.gov.kr)

- 통합검색

전체

▼

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

🔍

☐ 결과 내 재검색

-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

※ 자세한 제출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.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흐름

온라인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

석면관리종합정보망
회원가입
(<http://asbestos.me.go.kr/>)

- 회원가입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 (개인/법인/행정기관 중 택1)
- 건축물대장,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서류 첨부
-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: 세움터(www.eais.go.kr) / 정부24(www.gov.kr)
- ※ 건축물 소유자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, 회원가입 반려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
인정제도 신청

- [석면관리] → [어린이집인정절차신청]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
- 석면조사결과서 전체내용 첨부
- ※ 첨부파일이 미흡한 경우, 신청 반려

검토에 1~2개월 소요

불인정
(자료보완)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
인정제도 신청결과확인

- 핸드폰 문자 통보 또는 [어린이집인정절차현황] 메뉴의 "상태" 확인
- ※ 인정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 지자체 민원접수 진행

- ※ 불인정인 경우
- 자료보완 : 자료를 보완 후 인정절차 재신청
- 재조사 : 석면조사 재 실시 후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 민원접수 진행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승인 후

석면조사결과서
지자체 민원접수

- <온라인 접수>
- 정부24(www.gov.kr) → [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] 검색하여 민원접수
- <오프라인 접수>
-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
- ※ 접수방법 및 기타사항(안전관리인 지정 등)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

어린이집 석면조사결과서
제출완료

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

1. 제출되어야 할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 조사대상 파악

- 석면조사기간(2019.5.22 ~ 2020.5.21) 이후 제출(2020.6.21.까지) 되어야 할 어린이집 명단 파악.

2. 정확한 제도 안내

• 건축물석면조사 생략대상

- 2009년 1월1일 이후에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적용된 건축물.

*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 31조(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)

• 어린이집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(2012.04.29.) 부터 대상인 어린이집으로 지자체 관리대상에 있어야함.

※ 누락된 어린이집인 경우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에 제출

[주요 QnA]

(1) 기존에 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입니다.

이번 어린이집 조사대상확대로 석면조사를 재 실시 후 제출을 해야하나요?

⇒ 석면조사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

(지자체)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서울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중인 어린이집인지 확인필요

(2)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입니다. 16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석면조사를 17년도에 실시하였지만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도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
⇒ 지자체에 조사대상 확인 후 인정절차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지자체) 건축물석면조사 누락 대상인지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.

• 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연면적 430㎡미만 어린이집

- 인정절차 진행 후 지자체에 [별지 제10호서식] “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” 민원접수.

※ 건축물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

•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완료한 연면적 430㎡미만 어린이집

-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에 [별지 제10호서식] “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” 민원접수.

※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

•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

-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
※ 첨부파일인 건축물대장은 인정제도 대상 어린이집의 건축물대장을 모아서 첨부할 것

3. 온라인(정부24), 오프라인(방문)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

※ 인정절차 대상 어린이집이 인정절차 없이 민원접수하는 경우 반려해야 함(인정여부 확인 필수)

- 정부24 접수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.
- 방문 접수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접수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.
 - ①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지자체에 방문접수하는 경우
 - ②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미등록 후 지자체에 방문접수하는 경우
 - ②번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처리.

4. 석면관리종합정보망 DB등록

-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(승인) 후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DB등록

석면조사결과업무

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서

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서 등록

석면조사대상건축물DB

석면조사결과제출현황(일별)

안전관리인현황(일별)

안전관리인

*석면건축물관리대장

석면건축물 제외신청

법적의무대상건축물현황

다중이용시설 시설별현황

석면조사대상건축물DB

· 시도 전체 · 시군구 전체 · 건물명 · 대분류 전체 · 소분류 전체 · 대분류 전체 · 소분류 전체 · 법적대상 연결 전체 · 석면건축물여부 전체 · 작업완료여부 전체 · 특이사항 전체 · 석면건축물종류 전체(법적의무대상) · 주소 · 석면조사식별번호 · 위험성평가존재여부 전체 · 위험성등급 전체 · 신규조사대상 · 정장내역 전체

검색

Total

조사대상건축물등록 > 등록 > Excel 다운로드 >

번호	건물명	동명	주소	구분	구분2	석면 건축물여부	연면적	안전관리인 지정여부	건축물 식별번호
[Redacted Data]									
[Redacted Data]									

<정보망 등록화면>

5.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안내

-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련 내용안내.